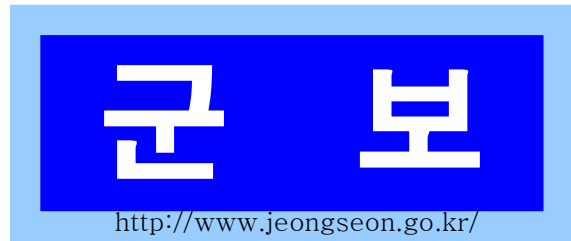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0호 2011. 4. 20.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45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정선군조례 제2246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정선군조례 제2247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조례 제2248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1
○ 정선군조례 제2249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14
○ 정선군조례 제2250호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78호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28
○ 정선군규칙 제1179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3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218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33
○ 정선군공고 제2011-224호 2011.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추가지원계획 공고.....	36
○ 정선군공고 제2011-233호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 공고.....	37
○ 정선군공고 제2011-23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8
○ 정선군공고 제2011-243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39
○ 정선군공고 제2011-246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입법예고..	42
○ 정선군공고 제2011-247호 정선군 현혈장려 조례 입법예고.....	46
○ 정선군공고 제2011-25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 정선군공고 제2011-251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5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5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중 고한읍 고한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한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편입

별표 중 사북읍 사북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북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제외

별표 중 여량면 유천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천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 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편입

별표 중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봉정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 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제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와 관련)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고 한 읍	고 한 리	고한리 일원, 중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 편입
사 북 읍	직 전 리	직전리 일원
	사 북 리	사북리 일원, 중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 제외
여 량 면	여 량 리	여량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중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 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102, 산103, 산104-1, 산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 편입
	구 절 리	구절리 일원
	남 곡 리	남곡리 일원
	고 양 리	고양리 일원
	봉 정 리	봉정리 일원, 중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 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102, 산103, 산104-1, 산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 제외

개 정 이 유

-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지구의 구획정리확정측량 결과 나타난 스키장 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지리적으로 이격되어있는 지역을 같은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제4의2 제1항·제2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구획정리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스키장 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
- 여량면 봉정리 5반을 여량면 유천2리로 편입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6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로 한다.

별표 여량면 유천2리 구역란 중 “지경, 양지마을”을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으로 하고, 같은 별표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본동, 새치, 발면, 외봉정”을 “본동, 새치, 발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명	리 명	이장정수	분구리명	구 역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u>지경, 양지마을, 외봉정</u> 마평, 궁대, 패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종양동 중동 일부, 사달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u>본동, 새치, 발면</u>

개 정 이 유

-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봉정리 5반)을 봉정리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로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을 봉정리 구역란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 구역란으로 편입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7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 당 확 인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상기 금액을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개 정 이 유

-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함.

주 요 내 용

-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8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익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세정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기금의 운용 심의(안 제6조)
-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9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인료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마다)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000원	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 이상 6.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0원	1,5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자동차	40,000원	2,500원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나. 보관료는 1일 12,000원(시간당 500원)으로 하되, 1회 최대보관료는1,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장소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원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개 정 이 유

- 「도로교통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차량의 견인 및 견인 소요비용(안 제2조 및 제3조)
- 대행비용의 지급(안 제5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50호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급수장치”라 함은”을 ““급수장치”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급수공사”라 함은”을 ““급수공사”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을 ““흡수정 등의 장치”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을 ““특수가압시설”이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을 ““수도사용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도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영세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수수료를”을 “설계수수료는”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단지 내 상가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⑥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용급수장치를”을 “공용급수장치의”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체”를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

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납부하여야”로, “수급자중”을 “수급자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비 선납금을”을 “공사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 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제15조제4항 중 “신구경별”을 “구경별”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공사의 시행으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이”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수판매)제3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경우,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관내 평균 판매단가에 의한다.

제26조제2항 중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을 “의무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 중 “구경별 정액료는”을 “구경별 기본요금은”으로,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과 같은 관로로 사용함에 따른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 및 급수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수 등을 예방해야 하며, 건축물 멸실 및 말소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급수장치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구경별정액표에 의한 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구경별 정액료는”을 “구경별 기본요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월 15 m³과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에는”을 “월 15m³ 이상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10m³을 합산한 량보다 적을 경우에는”을 “15m³ 미만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m³미만”을 “1 m³ 미만”으로, “절상”을 “반올림”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제36조제1항 중 “구경별정액료를”을 “구경별 기본요금을”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경별 정액료를”을 “구경별 기본요금을”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미납액이 있을 경우 당월분고지서에 미납액누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납금”을 “납부금”으로, “종료 후”를 “종료 후”로 한다.

①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 시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수료는”을 “수수료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측정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 ⑥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 ⑧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 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47조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요금을”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 “구경별정액표”를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정액금액”란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발행하는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

(용량 : m³, 금액단위: 원)

구 분	사 용 량	단 가	비 고
가정용	1-20	500	
	21-40	850	
	41이상	1,400	
일반용	1-50	960	
	51-100	1,230	
	101-300	1,580	
	301이상	2,630	
욕탕1종	1-200	1,000	
	201-300	1,210	
	301-500	1,540	
	501이상	2,010	
욕탕2종	1-200	1,520	
	201-300	2,160	
	301-500	3,120	
	501이상	4,650	
정수판매	m³ 당	전년도 공기업결산 판매단가	

[별표 3]

업 종 구 분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가사용 급수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마을회관, 공중시설(화장실)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일반용 최종요율 적용)
욕탕1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비영업풀장
욕탕2종	-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영업용풀장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정수판매	전년도 공기업결산 평균 판매단가 적용

개 정 이 유

- 현행 요금체계의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별 요율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하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 연체가산금을 하향 조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업종통합 : 현행 5개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 4개 업종 (가정용, 일반용, 욕탕1종, 욕탕2종)
- 영세사업자(월 1~300톤 사용업자)의 상수도 사용요율 하향조정
- 변경된 요율 적용 시 월 1,350여 가구에 26.3% 인하효과 발생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을 최대 10m³ 감면 (안 제40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688가구 -> 연간 41,280천원 감면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21가구 -> 연간 31,260천원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 53가구 -> 연간 3,180천원 감면
- 특별재난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주민 사용료 감면(안 제40조)
 - 특별재난지역 : 재난관리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 : 사용료 50% 감면
- 수도사용료 연체 가산금 하향조정 : 100분의5 -> 100분의2(안 제36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용료 체납시 단수조치 유예근거 신설 (안 제43조)
- 이의신청기간 연장 : 60일 -> 90일 (안 제50조)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규칙 제1178호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1996. 04. 26 규칙 제0874호)

개정(2003. 12. 26 규칙 제10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립어린이집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4.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①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신청서 접수일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일반주민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는 1주일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소재지
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청자가 위탁예정시설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사회복지법인 <개정 2003.12.26>
2. <삭제 2003.12.26>
3. 개인
4. 기타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수탁자선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별표 1]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해 선순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삭제 2003.12.26>

제5조(위탁해제)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0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보증인) ①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중 3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을 두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각서[별표 2]를 계약시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2008.2.18)됨에 따라 폐지되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규칙 제1179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여량면 유천2리 제1반 구역란 중 “유천2리 제1반”을 “유천2리 제1반, 종전 봉정리 제5반”으로 한다.

별표 여량면 봉정리 제5반 구역란 중 “봉정리 제5반”을 “종전 봉정리 제6반”으로 한다.

별표 중 여량면 봉정리 제6반 명칭란 및 구역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명 칭		구 역		명 칭		구 역	
여량면	유천 2리 제1반	<u>유천 2리</u>	<u>제1반</u>	유천 2리 제1반	<u>유천 2리</u>	<u>제1반, 종전 봉정리 제5반</u>	
	" 제2반	"	제2반	" 제2반	"	제2반	
	" 제3반	"	제3반	" 제3반	"	제3반	
	봉정리 제1반	봉정리	제1반	봉정리 제1반	봉정리	제1반	
	" 제2반	"	제2반	" 제2반	"	제2반	
	" 제3반	"	제3반	" 제3반	"	제3반	
	" 제4반	"	제4반	" 제4반	"	제4반	
	" 제5반	"	<u>제5반</u>	" 제5반	<u>종전</u>	<u>봉정리 제6반</u>	
	" 제6반	"	<u>제6반</u>	<u><삭제></u>		<u><삭제></u>	

개 정 이 유

-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 요 내 용

- 여량면 유천2리 제1반 구역란에 종전 봉정리 제5반을 추가함
 ○ 여량면 봉정리 제5반 구역란을 종전 봉정리 제6반으로 하고 봉정리 제6반 명칭란 및 구역란을 각각 삭제함.

정선군공고 제2011-218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조에 따라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 선 군 수
2011. 4. 5.

아 래

1. 공고기간 : 2011.4.05 ~ 2011.07.04
2. 공고대상 :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대철베드로의집
3. 공고방법 : 정선군홈페이지(인터넷)

붙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2부. 끝.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시설정보

■ 시설명 : 정선프란치스코의집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 시설장: 000/ 담당자: 000
(☎ 562-1001/Fax 562-8664)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4-01-0***** , 예금주(정선프란치스코의집)
신용협동조합, 04008-12-0***** , 예금주(정선프란치스코의집)

◆ 후원금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관공, 정보비		별도 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장애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 법인	정선프 란치스 교의집	117,518,016	36,831,784	80,686,232	60,322,170	75	20,364,062	25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207,845,473	65,408,160	142,437,313
사용내역	117,518,016	36,831,784	80,686,232
잔 액	90,327,457	28,576,376	61,751,081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시설정보

■ 시설명 : 대철베드로의집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시설장: 000/ 담당자: 000
(☎ 563-1413/Fax 563-1413)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5-01-1***** , 예금주(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 후원금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관공 정보비		별도 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아동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대철 베드로의집	30,738,180	0	30,738,180	26,008,750	85	4,729,430	15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41,960,679	0	41,960,679
사용내역	30,738,180	0	30,738,180
잔 액	11,222,499	0	11,222,499

정선군공고 제2011-224호

2011.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추가지원계획 공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5.

정 선 군 수

1. 지원규모 : 9,080백만원(군 전체)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 가.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 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2011.신규축사시설 우선지원)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2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내
5.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한우입식사업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11. 04. 01 ~ 05. 10(40일간)
 - 나.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제2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제5호서식)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33호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

정선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4. 12.

정 선 군 수

1. 공청회 개최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기본계획으로 승인된 모평문화공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병방산군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1년 4월 29일 (금) 14:00시
 - 나. 장 소 : 정선읍사무소 회의실
3.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개요
 - 가. 모평문화공원 폐지
 - 위 치 :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 면 적 : 129,800㎡
4.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26일
 - 나.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가. 공청회 당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나. 공청회 개최 후 7일(2011.05.06)까지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3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실시
2. 처분근거 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
3. 행정처분업소 및 처분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내역
건강기능 식품일반 판매업	알로에 마임	함명희	정선읍 봉양리 338-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	영업소 폐쇄
	승희 식품	서양자	정선읍 봉양리 221			
	천제명 홍삼	김광복	고한읍 고한리 104-35			
	청정선 영농조합 법인	황창주	정선읍 애산리 592-9			

4. 공고기간 : 2011. 04. 15. ~ 2011. 04. 30.까지(15일간)

5. 고지사항

영업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정선군보건소 위생팀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 의견을 제출치 않을 경우 처분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선군보건소 위생팀(☎ 033-560-2747)

2011. 4. 13.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243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4. 14.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 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북평면	리도	북단선	북평 208호	북평면 북평리 216-2	북평면 북평리 307	8 (0.26)	숙암 단임	5.0	4.0	도로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북평면장)

3. 사업시행기간 : 2011.03 ~2011.0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및 북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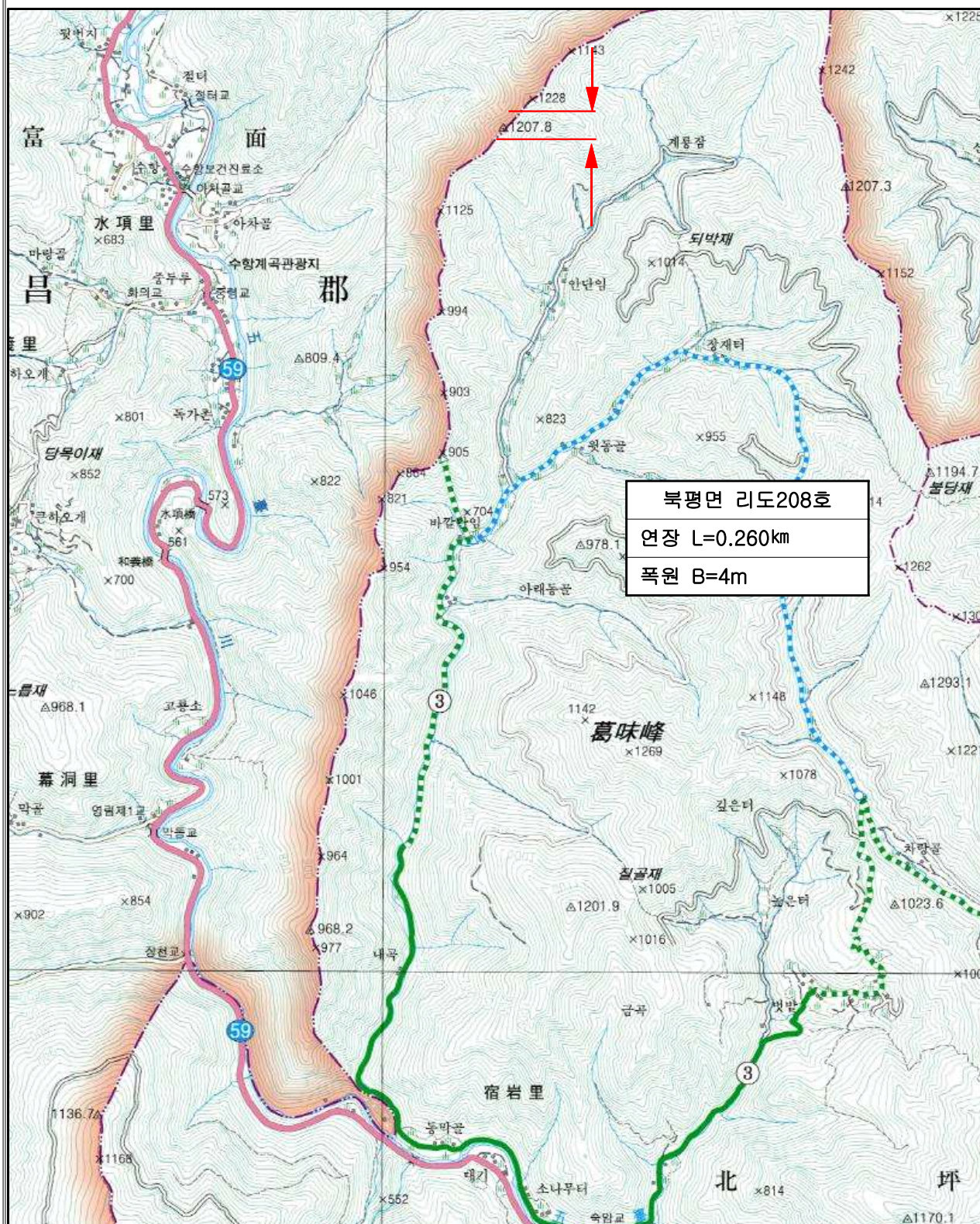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및 북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리도 북평 2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성명	주 소	지분	
1	북평면 숙암리	산69	임	72,694	930	국	산림청		
2	북평면 숙암리	산70	임	1,091	197	국	산림청		
계				73,785	1,127				

노 선 지 정 도



정선군공고 제2011-246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입법취지

-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없어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	200	300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	200	300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정선군보건소(전화 560-2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 관계법령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시행일 99·8·9]]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247호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

2. 입법취지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연간 약300만 명이 헌혈하여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자급할 수 있으나, 2010년 헌혈인구는 2,514,699명으로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계절적 영향,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유행, 말라리아 발생 등 환경적 영향으로 혈액수급 현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에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헌혈에 대한 인식전환 등 헌혈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헌혈장려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실시
- 관내에서 헌혈하는 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헌혈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헌혈 및 관련정보 제공, 유공자 포상 등 실시로 헌혈사업 활성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정선군보건소(전화 560-2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권장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1-25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5.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3.1.]]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251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정선군 개인택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에 따른 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의뢰가 있어 개인택시를 양수 받고자 하는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접수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정기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11. 4. 18~ 2011. 05. 03 (15일간)
2. 접수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3. 양도대상차량
 - 소 유 주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못골아파트 3동 304호
 - 차량번호 : 강원51바1064호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1) 운전경력
 - 가)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나)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 다) 사업용 ,자가용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 항 공통적용】
 - 2) 거주기간 등
 -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완화적용대상자(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1) 운전경력

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건설기계 포함)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 및 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자가용 화물, 건설기계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접
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항 공통적용】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
는 자

5. 접수 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자가용경력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원부, 기타입증서류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
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
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
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